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공고일 : 2023.12.07.)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780-3592~7, 3805~8)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선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내용은 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12.07.(목)이며, 이는 입주 자격(주택 소유, 소득, 자산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지역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모집 지역 및 모집인원)

구분	지역	모집인원(예비입주자)
제주시	동지역	36
서귀포시	동지역	15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뿐 아니라 향후 공급할 주택(주택 매입, 계약 포기 및 해약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 방법) 예비입주자는 순번(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을 개방하고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합니다.

▪ (입주 지정기간) 계약체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청소용역비, 전기안전 관리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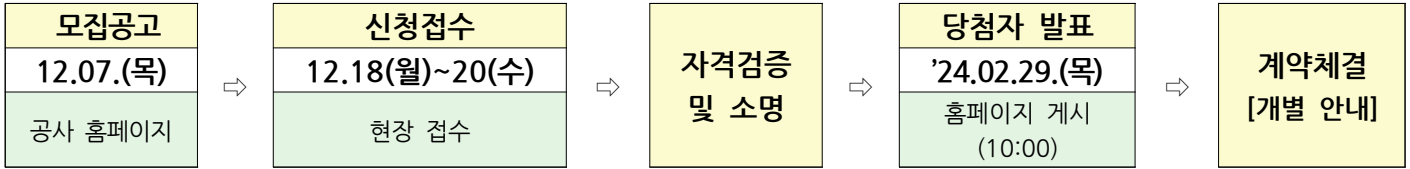
※ 주택에 따라 부과 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리사무실이 있는 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신청 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 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신청 순위 변경은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 개요

■ 모집 일정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 대상(주택 임대 조건 등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구분	지역	모집 세대 [예비입주자]
제주시	동지역	36
서귀포시	동지역	15

-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 물량의 5% 범위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에게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 물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구분	내용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 조건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공급 대상 주택별 임대 조건은 붙임 3 ‘청년 임대주택 공실 현황’ 참조		
	구분	1순위	2·3순위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40%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지원	▪ 희망자에 한하여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 가능 • 전환 단위 : 20만원 단위 • 전환 한도 -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 :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범위 내(전환이율 6%) - 임대보증금 감액 전환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임대료의 20개월 치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전환이율 2.5%) ※ 단, 제주특별자치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는 경우는 감액 전환 불가 • 주택별 임대 조건은 현재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후 개별 안내		

-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청소용역비, 전기안전 관리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부과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 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리사무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부과]

2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 입주 자격

- 우선공급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일반공급 : 공고일(2023.12.07.)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생년월일 1983.12.08.~2004.12.07.)
 - ② 대학생(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③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 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 기준	자산 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셔야 하며, 1, 3순위 신청자의 경우 ‘부모 무주택’ 가점 체크 시 부모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점 미인정됩니다.(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제외)

■ 소득·자산 산정 방법(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 가액 = 부동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금융자산 가액 + 기타자산 가액 - 부채
-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 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의 합산 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 가액 기준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우선공급 :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이후에도 경합 발생 시 추첨)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분리 거주 시에도 인정	3점
	나.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야 함	3점
② 소득수준이 소득 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 기준의 50% 이하 - (1인) 2,347,719원, (2인) 3,003,226원, (3인) 3,359,099원	3점
③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무주택	2점
④ 타지역 출신 여부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 대상 지역 외 시·군(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점
⑤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개발공사, L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1점
⑥ 장애 여부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

모집 단계	일정	내용
신청접수	12.18(월) ~ 12.20(수)	-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공공주택 주거 행복 상담실(세미양빌딩) - 현장 접수는 근무시간(10:00~17:00)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접수는 불가합니다.(원본 제출)
자격검증 및 소명 안내	대상자 개별 안내	- 신청 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입주자 발표	'24.02.29(목) (10:00 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정보 공개 - 공사 소식 -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입주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지역의 공급 가능한 주택에 대해 순번에 따라 주택을 개방하고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 후 입주 지정기간(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 및 주택 시설물 점검이 완료된 후에 입주 가능합니다. - 입주 완료 후 주민등록법에 의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서류	내용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방문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방문 신청할 때 (예비 배우자 포함)	①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인정) ②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공사양식) ③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 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통보 및 요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입주 자격 소명, 계약 및 입주 안내 등을 받지 못해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일(2023.12.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 발급) ※ 반드시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되어야 함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 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순위별 해당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1~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 (3순위) 본인 서명(부모 관련 배점 신청 시 부모 모두 서명)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추가 제출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 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제출 •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주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거주하는 자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3순위만 제출 (※1순위 제출 불필요) • (동의 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 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정자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정자 서명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2~3순위만 제출 (※1순위 제출 불필요) •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모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함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1. 일반공급 대상자

대상자		제출 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활 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 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장애인 가구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청년 자 격	청년 (19세~39세)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
	대학생 (19세~39세에 비해당인 경우)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복학 예정자) 휴학 증명서, 각서(공사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취업준비생 (19세~39세에 비해당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 증명서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 형태 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 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2.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자		제출 서류	발급처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퇴소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②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 종료확인서, 자립 수당 증명서 중 1부 (퇴소예정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 확인서(입주 시까지 퇴소확인서 제출) ②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 종료확인서, 자립 수당 증명서 중 1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 정책,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 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유의 사항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 개방	입주 예정 시점에만 해당 주택 개방이 진행되며 관련한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동호 지정 계약체결	- 신규 매입 주택 발생 및 기존주택 공실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주택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안내된 호실 계약을 거절하실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해당 호실은 뒷순위 예비입주자에게 안내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관련 (기금 대출)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본인 명의 임대주택을 말하며, 부모의 임대주택 동일 거주 시 입주 전 퇴거해야 함)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I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총 9회, 최장 20년) - 아동보호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예정자·퇴소자로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총 9회, 최장 20년) -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 재계약 시 소득 조건과 관련하여 1순위 입주자가 재계약 시 2, 3순위 자격을 유지한 경우 2, 3순위 임대 조건을 적용하며, 대학생의 경우 휴학 중인 경우에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후 청년매입주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 대상 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관련 항목	유의 사항
기타 사항	▪ 청년매입임대주택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기의 일상 관리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기의 유지보수(고장 수리)는 공사에서 시행하며 기기의 교체는 공사 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가전기기의 디자인 불만, 본인 제품 사용 등 기타 사유로 기기의 철거 및 이동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 이전 등은 불가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사회적 문란 행위, 상습 음주 및 흡연, 지인 등의 잦은 방문 등)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 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 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 등)에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우리 공사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 및 실태조사를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에 연락처, 주소 등 오기 또는 변경으로 인한 미통보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 전, 후 주민등록법에 의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 제출) ▪ 대상 주택의 공용부 청소 용역은 공사에서 선 시행하며, 시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용역 계약기간 이후 자치회 구성 등 사유 발생 시 용역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주택 제외)

6 문의처 및 신청 장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064) 780-3592~7, 3805~8
신청 장소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공공주택 주거 행복 상담실(세미양빌딩)

이 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2023.12.0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

붙임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붙임2

소득·자산 산정 방법 및 자료출처

- 소득·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구분		산정방법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출처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출처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붙임3 청년 임대주택 공실 현황

[※ 공고일 현재 공실 현황으로 이 외 주택에서 공실 발생 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추가 공급됩니다.]

주택명	주소	호수	전용면적(㎡)	방수	순위	임대보증금 (원)	임대료 (원)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102	18.94	1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201	18.96	1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202	18.94	1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302	18.94	1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303	18.94	1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501	18.96	1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503	18.94	1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505	18.96	1	1	4,392,000	80,270
					2,3	7,320,000	133,790
네오캠퍼스	제주시 연삼로411	508	18.92	1	1	4,527,000	82,740
					2,3	7,545,000	137,900
네오캠퍼스	제주시 연삼로411	608	18.92	1	1	4,527,000	82,740
					2,3	7,545,000	137,900
솔아트빌	제주시 천수로 6길 9	406	30.48	1	1	4,410,000	80,600
					2,3	7,350,000	134,340
메디치	제주시 가령로 76	1005	25.48	1	1	5,310,000	93,950
					2,3	8,850,000	156,590
대원에버그린빌	제주시 노연로 126	503	28.72	1	1	5,373,000	95,070
					2,3	8,955,000	158,450
청남빌	제주시 광양4길 11	203	24.28	1	1	4,779,000	84,560
					2,3	7,965,000	140,930
아프네오피스텔	제주시 중앙로14길 37-1	604	33.3	1	1	5,418,000	95,860
					2,3	9,030,000	159,780
예그린하우스텔 2차	제주시 은남1길 19	507	30.38	1.5	1	8,820,000	101,180
					2,3	14,700,000	168,640
예그린하우스텔 5차	제주시 고마로48	401	31.72	1.5	1	9,300,000	137,430
					2,3	11,625,000	171,790
예그린하우스텔 5차	제주시 고마로48	802	31.72	1.5	1	9,708,000	143,460
					2,3	12,135,000	179,320
노블하우스	서귀포시 중문로81번길 59	203	33.02	1.5	1	5,094,000	90,130
					2,3	8,490,000	150,220
제주더그레이튼	서귀포시 서문로 4	405	19.57	1	1	10,944,000	161,720
					2,3	13,680,000	202,160
제주더그레이튼	서귀포시 서문로 4	409	19.57	1	1	10,944,000	161,720
					2,3	13,680,000	202,160
제주더그레이튼	서귀포시 서문로 4	601	19.57	1	1	10,944,000	161,720
					2,3	13,680,000	202,160
제주더그레이튼	서귀포시 서문로 4	605	19.57	1	1	10,944,000	161,720
					2,3	13,680,000	202,160